

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58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03. 03. 허옥희 의원 등 5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3. 1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3. 20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에서 자문자와 자문에 응하는 자가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고, 정책 자문에 있어서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 있어 이를 신설하며,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명확화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(안 제2조, 제3조)
나.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한 용어 및 표현 정비(안 제5조, 제10조)
다. 군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6호
- 예고기간: 2023. 3. 3.(금) ~ 2023. 3. 10.(금) [7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□ 조례 개정의 취지

-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정책자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 검토

- 위원 구성 정비(안 제3조)
 - 군수가 자문자인 동시에 자문을 하는 위원회 위원장인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함.
- 용어 및 표현 정비(안 제5조, 제10조)
 - ‘제척’ 을 ‘자문 배제’ 로 순화
 - ‘간사 기획예산담당관’ 을 ‘간사 정책기획담당부서의 장’ , ‘서기 기획담당’ 을 ‘그 부서의 담당’ 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의 영향이 없도록 함.
-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)
 - 위원회가 기능 수행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,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□ 종합의견

- 정책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자문자가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참고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의 근거를 두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3. 20. 원안가결 함.